

18 성별·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(고용부)

□ 과제목표

-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
- 출산·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

□ 주요내용

- (청년고용의무제 확대) '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(매년 정원의 3% → 5%),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(인센티브 검토)
- (추가고용장려금 신설)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('17년 5천명, '18년~'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)
- (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)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(30만원, 3개월) 신설·지급('17년~'18년)
 - '19년부터 훈련참여·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(50만원, 6개월) 지급
 - '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
- (정년일자리 보장) 희망퇴직 남용 방지,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('17년)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
- (인생3모작 지원) '재직-전직·재취업-은퇴' 단계별 재취업 지원
- (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) 적용사업장 확대,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
- (새일센터 등) 새일센터 확대(150→175개소), 창업지원·직업훈련·취업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

□ 기대효과

-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
-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·재취업 원활화
-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